체육시설 설치 · 운영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설치 · 운영]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 경영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법령 정보를 사전준비,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운영, 체육시설업 승계 · 휴업 등의 시간적 순서로 소개합니다.

체육시설 설치 · 운영 1
1. 체육시설업 개관 4
1.1. 체육시설업 개념 4
1.1.1. "체육시설업"이란? 4
1.2. 체육시설업의 구분 6
1.2.1. 등록 체육시설업 6
1.2.2. 신고 체육시설업 7
2.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9
2.1.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9
2.1.1. 입지선정 9
2.1.2. 건축물 용도확인 등 10
2.2.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12
2.2.1. 공통 시설 기준 12
2.2.2. 종류별 시설 기준 15
2.2.3. 소방시설 기준 21
3. 체육시설업 등록 등 23
3.1.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23
3.1.1. 체육시설업 등록 23
3.1.2. 체육시설업 신고 26
4. 체육시설업 운영 30
4.1. 회원제 운영 30
4.1.1. 회원모집 등 30
4.1.2. 회원의 권익보호 32
4.2. 체육지도자 배치 35
4.2.1. 체육지도자의 배치 35
4.3. 준수사항 등 39
4.3.1. 준수사항 39
4.3.2. 안전·위생기준 및 보험 가입 41
5. 체육시설업 승계·휴업 등 48
5.1.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48
5.1.1. 체육시설업 승계 등 48
5.2.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49
5.2.1. 체육시설업의 휴업·폐업 49

1. 체육시설업 개관

1.1. 체육시설업 개념

1.1.1. "체육시설업"이란?

체육시설의 의의 및 종류

체육시설의 의의

▪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위 시설은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

체육시설의 구분

▪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구분	체육시설의 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파크골프장, 풋살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 Q&A – 풋살 경기장 그 밖에 체육경기장들의 체육시설 해당 여부

Q – 풋살경기장을 설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해당 여부에 따라 재산세 부과시 토지의 과세구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풋살경기장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체육시설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 45개 종목의 체육시설을 열거함과 동시에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것" 역시 체육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해 지침, 고시 등으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해당 시설의 운동 종목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인지 여부로 체육시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풋살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풋살´은 축구의 한 형태(실내축구)로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주관하는 국제대회 및 대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국내대회가 치러지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통용되는 경기규칙과 경기장 규격이 있으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풋살장 외에도 파크골프장, 산악자전거 경기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요가 시설, 인공암벽장, 론볼장 등도 체육시설에 포함됩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국민신문고 > 묻고답하기(2019-10-29)]

체육시설업의 의의 및 종류

체육시설업의 의의

▪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

▪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구분	내용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해야 함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는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으로 나뉩니다. 회원제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하고, 대중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 Q&A – 아파트 단지 내 체육시설을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Q – 거주하고 있는 주상 복합 아파트에 커뮤니티 시설 중 체육 시설(헬스장, 수영장)이 있습니다. 위의 시설은 따로 체육시설업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영장이 있다고 하면 안전 요원의 배치나 수영장 안전에 관한 기준은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체육시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업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학원법」, 「건축법」, 「주택법」 등 타 개별법령에서도 각각의 목적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나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모든 체육시설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배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주민운동시설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업과는 구분되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규정되는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국민신문고 > 묻고답하기)

※ 주민운동시설이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체육시설업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376 판결).
따라서, 「주택법」 상의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이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1.2. 체육시설업의 구분

1.2.1. 등록 체육시설업

등록 체육시설업이란

등록 체육시설업의 구분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및 자동차 경주장업이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골프장업

▪ 골프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 골프장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골프장업을 등록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 및 제19조).

▪ 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1.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 및 제5조에서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

스키장업

▪ 스키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스키장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스키장업을 등록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 및 제19조).

▹ 스키장업은 눈, 잔디나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2 제1호).

자동차 경주장업

▪ 자동차 경주장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각

자동차경주장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경주장업을 등록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 및 제19조).

- 자동차 경주장업은 2륜 자동차 경주장업과 4륜 자동차 경주장업으로 구분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2호바목).

1.2.2. 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이란

신고 체육시설업의 구분

-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및 인공암벽장업이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구분	내용
요트장업	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보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
빙상장업	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
종합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체육도장업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
썰매장업	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안의 썰매장을 제외)을 경영하는 업
무도학원업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
무도장업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
체육교습업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직접 이용료를 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함) 가. 농구 나.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포함함) 다. 배드민턴 라. 빙상 마. 수영 바. 야구 사. 줄넘기 아. 축구 자. 가.부터 아.까지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인공암벽장업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등반을 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업

2.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2.1.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2.1.1. 입지선정

입지선정

확인사항

▪ 입지선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운영하려는 체육시설업을 해당 지역에 설치해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치·운영하려는 체육시설업이 해당 지역에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발급받아 그 용도지역에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하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참조),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임야대장)'을 열람·발급받아 그 용도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 ※ 부동산 정보 포털사이트(https://seereal.lh.or.kr)에 접속하여 해당 체육시설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용도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국토교통부 토지e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의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정보" 콘텐츠에서 해당 체육시설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확인서류입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발급받거나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되고, 열람은 국토교통부 토지e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토지대장(임야대장) 확인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산지)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 신청하여 열람 또는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 등"이라 함)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를 말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무도학원 및 무도장 등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호).

▹ 예외적으로 상대보호구역에서는 무도학원 및 무도장 등의 체육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 또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교 등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무도학원 및 무도장 등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호).

> ※ 그 밖에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상가건물 임대차』 콘텐츠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 계약 전 확인사항 – 상가건물의 용도 등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2. 건축물 용도확인 등

건축물 용도확인

건축물의 용도확인

▪ 체육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적합한 용도별 건축물 용도에 설치·운영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건축물의 종류	내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체육시설업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의 시설을 말함)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중 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 시설(체육시설업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위락시설	• 무도학원 및 무도장

건축물 용도확인 방법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나타내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건축법」 제38조제1항).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축물의 종류가 해당 체육시설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은 당초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용도변경 대상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어느 시설군 및 세부용도에 속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건축물 용도변경이 허가대상인지 또는 신고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파악하여 해당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

> ※ Q&A – 학교 내 수영장의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
> Q – 초등학교 안에 위탁을 받은 수영장이 있는 건물이 건축물대장 상 주 용도가 ´교육 및 연구시설´로 되어 있고

상세용도에 수영장이라고만 등재되어 있다면, 본래 수영장의 「건축법」 상 용도인 ´운동시설´로 되어있지 않아도 신고 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A 대법원은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인·허가에 관한 관계 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건축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골프연습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건축법」 상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의 규정과 판례를 보건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체육시설업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관할 지자체는 해당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때에는 법 위반의 중대성 및 고의성, 신고수리 거부 외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존재 유무, 이와 관련된 당사자 및 제 3자의 이익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국민신문고 > 묻고답하기(2017-06-04)]

※ 그 밖에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용도변경』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2.2.1. 공통 시설 기준

필수 시설 기준

편의시설

▪ 체육시설업자는 다음의 편의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1호가목).

구분	내용
주차장 및 화장실	• 체육시설의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 및 화장실을 갖춰야 함 √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및 주차장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탈의실과 급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음)을 갖추어야 함 √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함

안전시설

▪ 체육시설업자는 다음의 안전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1호가목).

구분	내용
조도(照度)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함
응급실 및 구급약품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춰야 함 √ 다만, 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환기시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춰야 함
어린이통학버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춰야 함 • 이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함
안전난간	• 높이 3m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

관리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1호가목).

▹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의 시설 기준

편의시설 및 운동시설

▪ 체육시설업자는 다음의 안전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1호나목).

구분	내용
편의시설	•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음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음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운동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함

※ 편의시설로 목욕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기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

· 「공중위생관리법」의 문언, 체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는, 목욕·발한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영업자의 광고·홍보 내역, 해당 서비스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설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는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목욕장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는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이 아니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목욕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은 제외)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

2.2.2. 종류별 시설 기준

시설 기준

종류별 시설 기준의 개요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 종류별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종류별 시설 기준의 내용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2호).

체육시설	구분		시설 기준
골프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비회원제 골프장은 3홀 이상의 골프코스를 갖춰야 함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함(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m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음)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함
		안전시설	· 위치 및 지형상 타구에 의해 골프장 주변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비구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해야 함

스키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슬로프는 길이 300m 이상, 폭 30m 이상이어야 함(지형적 여건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 평균 경사도가 7° 이하인 초보자용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해야 함 ·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를 설치해야 함
		안전시설	·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함께 설치하거나 안전망과 안전매트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해야 함 √ 이 경우 안전망은 그 높이가 지면에서 1.8m 이상, 설면으로부터 1.5m 이상이어야 하고, 스키장 이용자에게 상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안전매트는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되, 그 두께가 50㎜ 이상이어야 함.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최하부는 모두 설면과 접촉해야 함 ·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雪上車)를 각각 1대 이상 갖춰야 함 · 정전 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춰야 함
		관리시설	·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에는 조경을 해야 함
요트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3척 이상의 요트를 갖춰야 함 · 요트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계류장(繫留場) 또는 요트보관소를 갖춰야 함
		안전시설	· 긴급해난구조용 선박 1척 이상 및 요트장을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춰야 함 · 요트 내에는 승선인원 수에 적정한 구명대를 갖춰야 함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5척 이상의 조정(카누)을 갖춰야 함 · 수면은 폭 50m 이상 길이 200m 이상이어야 하고, 수심은 1m 이상이어야 하며, 유속은 시간당 5km 이하여야 함
		안전시설	· 조정장(카누장)의 수용능력에 적정한 구명대 및 1척 이상의 구조용 선박(모터보트)과 조정장(카누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춰야 함
빙상장업	필수시설	안전시설	· 빙판 외곽에 높이 1m 이상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함 · 유해 냉각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제빙시설을 설치해야 함 · 정빙기실(整氷機室) 내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자동차경주장업	필수시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바목1) 및 2) 참조

승마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 마장면적은 500㎡ 이상이어야 하고, 실외 마장은 0.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함 ·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해야 함
종합 체육시설업	필수시설	-	·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기준에 따름
	임의시설	-	· 해당 체육시설업의 임의시설기준에 따름 · 수영조 바닥면적과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운동전용면적을 합한 면적의 15% 이하의 규모로 체온관리실[온수조·냉수조·발한실(發汗室: 땀 내는 방)]을 설치할 수 있음(다만, 체온관리실은 종합 체육시설업의 시설이용자만 이용하게 해야 함)
수영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물의 깊이는 0.9m 이상 2.7m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를 해야 함(다만, 어린이용·경기용 등의 수영조에 대해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 ·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 통로 등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야 함 ·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m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m 이상으로 해야 함 · 도약대는 사용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함 · 도약대로부터 천장까지의 간격이 스프링보드 도약대와 높이 7.5m 이상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5m 이상, 높이 7.5m 이하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3.4m 이상이어야 함 ·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해야 함 ·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배관설비는 물이 계속하여 순환되도록 해야 함 · 수영조 주변 통로의 폭은 1.2m 이상[난간 손잡이(hand rail)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2m 미만으로 할 수 있음]으로 하고, 수영조로부터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마련하여 오수 등이 수영조로 새어 들 수 없도록 해야 함
		안전시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해야 함 · 수영조 내 사다리는 벽과 사다리 사이에 팔,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함
	임의시설	편의시설	· 물 미끄럼대,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를 설치할 수 있음
체육도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운동전용면적 3.3㎡당 수용인원은 1명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함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의 흡수가 가능하게 해야 함 ·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춰야 함

골프연습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 실외 연습에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 코스(각 홀의 부지면적은 1만3천㎡ 이하여야 함)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m 이하여야 함)를 갖춰야 함(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해서는 안 됨) · 타석 간의 간격은 2.5m 이상, 타석과 타석 뒤 보행통로와의 거리는 1.5m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함
		안전시설	·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함(다만,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임의시설	운동시설	· 연습이나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음 · 2홀 이하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음(다만,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하면 안 됨)
체력단련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함 ·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춰야 함
당구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당구대 1대당 16㎡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함
썰매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슬로프 규모에 적절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연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만 해당) 등을 갖춰야 함
		안전시설	· 슬로프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해야 함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하며, 무도장업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330㎡ 이상,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231㎡ 이상이어야 함 · 소음 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함 · 바닥은 목재 또는 목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바닥재로 된 마루로 하고 마루 밑에 받침을 두어 탄력성이 있게 해야 함 ·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적합해야 하고, 그 밖에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위치여야 함 · 운동시설은 사무실 등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돼야 함 · 업소 내의 조도는 무도학원업은 100럭스 이상, 무도장업은 30럭스 이상 돼야 하며,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
야구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야구장에는 투수석(투수 마운드), 타자석(타자 박스), 코치석(코치 박스), 충돌 경고 트랙, 포수 뒤 그물망, 선수대기석(더그아웃), 타자 시선 보호벽, 파울 기둥(파울 폴), 대기타자 공간(서클) 및 베이스를 설치해야 함 · 관람석이 있는 경우, 의자와 계단은 결함 없이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함 · 경기장은 평탄하게 유지해야 함
		안전시설	· 타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루, 3루 및 홈플레이트 뒤에는 안전장치(그물망 등)를 설치해야 함(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야 뒤쪽에도 설치해야 함)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골프 종목	필수시설	운동시설	· 타석과 스크린(화면)과의 거리는 3m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8m 이상,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는 1.5m 이상이어야 함 · 이용자가 타석에서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시설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함
		안전시설	·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벽면, 천장 및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함 · 스크린은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과의 사이에 틈을 두고 평편하게 설치돼야 함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해야 함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야구 종목 :	필수시설	운동시설	· 타석과 스크린과의 거리는 6m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4m 이상, 타석 중앙에 설치된 홈플레이트와 후면 벽체와의 거리는 1.5m 이상이어야 함 · 타석과 대기석을 구분하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칸막이는 철망, 강화유리 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이어야 함
		안전시설	· 모든 안전시설은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해야 함 · 타석실 내 스크린을 제외한 모든 벽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함 · 스크린은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과의 사이에 틈을 두고 평편하게 설치돼야 함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해야 함
체육교습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보조장비를 갖춰야 함
		안전시설	· 이용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동 공간에 적절한 안전 장치를 갖춰야 함 · 빙상·수영 종목을 교습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및 제2호 마목·자목의 시설 기준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및 제2호사목·차목의 안전·위생 기준이 준수되는 시설에서만 해야 함
인공암벽장업	필수시설	운동시설	· 등반벽 마감재 및 홀더 등은 구조부재(構造部材)와 튼튼하게 연결해야 함
		안전시설	· 볼더링 인공암벽의 경우에는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매트리스를 인공암벽의 추락면에 설치해야 함 · 실외 인공암벽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경고 센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 또한, 인공암벽장을 무단이용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함
		관리시설	· 실외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누수나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실외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 옹벽 및 석축 등이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함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은 제외)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

2.2.3. 소방시설 기준

소방시설의 설치

소방시설설치 대상 체육시설

▪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제2호·제11호·제14호).

구분	내용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만 해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 무도장업 및 무도학원업

설치할 소방시설의 종류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소방시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의 <소방안전관리 일반 – 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등 적용범위 – 소방시설 등의 종류>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체육시설업 등록 등

3.1.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3.1.1. 체육시설업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 등록 체육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계획 승인 절차

▪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항).

-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명세서
-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
-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 주요 설비·기기·기구 등의 설치계획
-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사업계획 승인 취소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하지 않은 경우
-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절차

체육시설업의 등록절차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항).

-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함. 다만, 해당 서류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서류(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위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시·도지사는 위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 사업계획 승인 의제

·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의 인가·허가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인가·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기간

·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라 함)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준공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 다만, 천재지변이나 법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경우로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위에서 정한 사유로 준공기간 내에 설치공사를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공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설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 시·도지사는 위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연장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설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

·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그 공사에 착수하기 30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공사를 준공했을 때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성립됩니다.

·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1조제2항).

사업자등록 신청기한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까지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제1항제8호 본문).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 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교습업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않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그 밖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체육시설업 개관 – 체육시설업의 구분 – 등록 체육시설업>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2.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

신고 및 변경

▪ 신고 체육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같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Q&A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대상**

Q. 기존 태권도 종목 체육도장업을 합기도 종목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신고로 변경이 가능한지, 폐업 후 신규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체육도장업"으로 신고 후 영업 중이던 체육도장에서 운동 종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 지자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국민신문고 > 묻고답하기(2020-01-21)]

※ **Q&A –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Q.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572, 2017. 12. 12. 법령해석 사례

※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신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전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의 신고를 하고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2호, 2020. 1. 31.) 부칙 제2조제2항].

※ 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체육교습업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않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또한, 2020년 11월 20일 당시 체육교습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0년 11월 20일부터 1년까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교습업을 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67호, 2020. 5. 19.) 부칙 제2조].

체육시설업 미신고(변경신고)에 대한 처분

▪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은 제외)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제3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6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은 제외)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

체육시설업 신고절차

체육시설업의 신고절차

▪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3.의 서류만을 첨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한 후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 체육시설업 신고수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거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6062 판결).

※ 적법한 요건을 갖춘 체육시설업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이란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성립됩니다.

·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1조제2항).

- 사업자등록 신청기한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까지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제1항제8호 본문).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 그 밖의 신고 체육시설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체육시설업 개관 – 체육시설업의 구분 – 신고 체육시설업>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체육시설업 운영

4.1. 회원제 운영

4.1.1. 회원모집 등

회원의 모집방법 등

회원 모집계획서 제출

▪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을 적은 서류

  √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이 명시된 것이어야 함)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만 첨부)

  √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첨부)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 받은 회원모집계획서와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함

-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통보받은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회원모집결과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아래의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봅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

회원모집공고

▪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집공고안을 제출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회원은 공개로 모집해야 하고,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호가목 본문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 게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등록 체육시설업에 한정)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신고 체육시설업에 한정)

▪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 또는 인쇄물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 일간신문
- 인터넷신문의 주소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 회원탈퇴 등으로 결원된 회원을 보충하는 경우나 공개모집 후 정원에 미달된 회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호가목 단서).

▪ 모집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 회원가입 신청을 모집공고일부터 3일이 지난 날부터 하게 함
- 회원가입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함
- 회원모집기간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갖추어 둠
- 회원이 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회원모집 시기 및 인원

▪ 회원모집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

구분	내용
등록 체육시설업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30% 이상 진행된 이후
신고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

▪ 회원모집 인원의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호).

-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 시설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 미만일 때에는 모집하려는 전체 회원의 입회금을 합한 금액이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당시 사업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원을 모집할 것

▪ 회원을 신청한 자가 모집하려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회원을 선정해야 하며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호나목·다목).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호).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은 제외)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

4.1.2. 회원의 권익보호

회원의 권익보호

회원자격 양도 등

▪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구분	내용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함
입회금액의 반환	•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함 ※ 입회금액은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내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 • 다만, 체력단련장업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에 해당되는 헬스·피트니스업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자가 계약기간 도중 중단하더라도 이미 납입한 이용료의 10% 위약금만 내면 남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함(「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함)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함(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름)
회원증의 확인·발급	•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발급해야 함(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1. 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수영장업·스키장업·승마장업 또는 체력단련장업 : 회원을 모집하는 자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체육시설업 회원증 확인자 지정」)으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원모집결과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 2. 1. 외의 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한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회원모집상황을 회원관리대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한 후 발급
회원 대표기구	•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해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함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호).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은 제외)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

이용료의 반환

이용료 반환 규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래의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체육시설업자는 아래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및 별표 3의2).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frac{\text{이미 경과한 기간(일수)}}{\text{계약상 이용 기간(일수)}}$)]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 – 위약금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frac{\text{이미 경과한 기간(일수)}}{\text{계약상 이용 기간(일수)}}$)]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 + 위약금

※ 위 표에서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함

※ 위 표에서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음)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호).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은 제외)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

4.2. 체육지도자 배치

4.2.1. 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 체육시설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며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모	배치인원
스키장업	·슬로프 10면 이하 ·슬로프 10면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요트장업	·요트 20척 이하 ·요트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조정장업	·조정 20척 이하 ·조정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카누장업	·카누 20척 이하 ·카누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빙상장업	·빙판면적 1,500㎡ 이상 3,000㎡ 이하 ·빙판면적 3,000㎡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승마장업	·말 20마리 이하 ·말 20마리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수영장업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 이하인 실내 수영장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1명 이상 2명 이상
체육도장업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골프연습장업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50타석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체력단련장업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체육교습업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인공암벽장	·실내 인공암벽장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 이하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 초과	1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체육교습업의 경우 주된 운동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다른 체육교습업의 운동 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할 수 있습니다.

▪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 Q&A – 체육지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시탑에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Q.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지도자가 수상안전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도 갖춘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가 포함되는지

A. 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의무와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치 목적에 있어서도 체육지도자는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체육활동 지도를 위한 것이고(「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참조) 수상안전요원은 수영장 이용자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수상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수영장 이용자가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각각의 배치기준에 맞게 체육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을 별도로 배치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447, 2019. 11. 11. 법령해석 사례)

※ Q&A – 24시 체력단련장업 체육지도자 상시배치

Q.「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에서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는데 24시간 체력단련장업을 운영하고 있을 시 24시간 체육지도자가 상시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지

A.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 시설은 1명 이상을, 300㎡ 초과 시설은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이용자들이 올바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운동효과의 거양과 함께 잘못된 운동으로 인한 부상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상기에 제시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체육지도자 배치는 ´운동의 지도가 필요한 자가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맞게 상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국민신문고 > 묻고답하기(2020-02-28)]

체육지도자 자격증

체육지도자란

▪ 체육지도자란 18세 이상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스포츠윤리교육이 포함된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제3항·제5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구분

▪ 스포츠지도사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합니다. 스포츠지도사 자격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구분	내용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봄)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1.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1.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함)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구분

▪ 건강운동관리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1.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1.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함)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 제외)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구분

▪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합니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

구분	내용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증 구분

▪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고,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4 및 제9조의5).

※ Q&A – 헬스장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Q. 헬스장 내 고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보디빌딩 자격증밖에 없는 건가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에어로빅으로는 헬스장 지도자로 일할 수 없나요?

A.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 시설은 1명 이상을, 300㎡ 초과 시설은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이용자들이 올바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운동효과의 고양과 함께 잘못된 운동으로 인한 부상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인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체육지도자 배치는 운동의 종목에 맞게 상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위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체력단련장은 웨이트트레이닝을 위한 중량 저항 기구를 다루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안전한 기구 사용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한 만큼, 댄스 형식의 유산소 운동인 에어로빅 종목 체육지도자가 체력단련장 체육 지도를 수행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운동 종목에 맞는 체육지도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인원 기준에 맞게 상시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체육지도자 외에 지도행위를 보조하는 자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운동 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국민신문고 > 묻고답하기)

4.3. 준수사항 등

4.3.1. 준수사항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체육시설업자가 준수할 사항

▪ 체육시설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전단).

-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할 것
-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함)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후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 그 밖의 이용료 반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체육시설업 운영 – 회원제 운영 – 회원의 권익 보호>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위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 공연이나 무대연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무도장업자만 해당)
- 업소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조·가공한 음료수와 자동판매기기에 의한 음료수의 판매는 제외)

▪ 체육교습업자는 위의 규정 외에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교습을 하지 않을 것
-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위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호).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은 제외)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

4.3.2. 안전·위생기준 및 보험 가입

공통 안전·위생기준

체육시설 공통 안전·위생기준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이용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 다음의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6 제1호).

▹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해야 함

▹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함

▹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해야 함

▹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됨

▹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을 고지해야 함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함

▹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함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포함)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어린이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해야 함

▹ 체육시설에 설치된 조명타워 또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은 해당 부착물의 고정하중(구조물 자체의 무게 또는 구조물에 고정되어 항상 작용하는 외부의 무게)과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외면에 작용하는 하중)의 영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조명등의 변경 시 변경된 무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함

종류별 안전·위생기준

체육시설 종류별 안전·위생기준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이용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다음의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6 제2호).

구분	내용
골프장업	· 코스관리요원(골프장에서 잔디 및 수목의 식재, 재배, 병해충 방제와 체육활동을 위한 풀베기작업과 농약의 안전한 사용·보관 및 오염 방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을 18홀 이하인 골프장에는 1명 이상,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에는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함
스키장업	· 스키지도요원(스키장에서 이용자에게 스키에 관한 지식과 스키를 타는 방법, 기술 및 안전 등에 관하여 교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스키구조요원(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순찰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후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스키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배치하되, 스키지도요원은 슬로프면적 5만㎡당 1명 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운영 중인 슬로프별로 2명 이상(슬로프 길이가 1.5km 이상인 슬로프는 3명 이상)을 각각 배치해야 함 · 각 리프트의 승차장에는 2명 이상의 승차보조요원을, 하차장에는 1명 이상의 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해야 함 ·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함 · 스키장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셋 이상의 장소에 게시해야 함 ·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춰야 함
요트장업·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해야 함 ·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는 감시요원을 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함(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 구조활동에 관한 정해진 과정을 마친 자, 해군이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함) ·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트장의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함

자동차경주장업	· 경주참가차량이나 일반주행차량 등 트랙을 이용하는 차량은 사전에 점검을 한 후 경주나 일반주행에 참가하도록 해야 함 · 경주참가자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행능력을 평가하여 부적격자는 트랙의 이용을 제한해야 함 · 경주진행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경주참가자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해야 함 ·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통제소요원, 감시탑요원 및 진행요원 등 각종 요원은 각각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해야 함 · 관람자에게 사전에 안전에 관한 안내 방송을 해야 함 · 경주 기간 중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각 1명 이상을, 그 외의 운영 기간 중에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함 · 이용자가 안전모, 목보호대, 불연(不然) 의복·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용자가 이들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춰야 함
승마장업	· 이용자가 항상 승마용 신발을 착용하고 승마를 하도록 해야 함 · 장애물 통과에 관한 승마를 하는 자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 말이 놀라서 낙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장 주변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는 것 등을 금지하게 해야 함
종합체육시설업	· 종합 체육시설업을 구성하고 있는 해당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른다.
	· 수영조·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안 됨 ·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수심·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 부분에서 반지름 3m 이내의 수면에서는 5명 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해서는 안 됨 ·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함 · 수영조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해야 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해야 함. 다만, 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습자 중에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1명만 배치할 수 있음 √ 수영장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 수상구조사 √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 인명구조요원(「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자격 √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수영장업	이수한 후 취득하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 수상안전요원에게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됨. √ 수상안전요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시탑에 위치해야 함. 다만,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영조 전체를 볼 수 있으면서 즉시 입수가 가능한 감시탑 주변의 장소에 있을 수 있음. √ 수상안전요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함. √ 수상안전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함.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이 수영조를 점검하는 동안에는 수영조 안의 이용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며, 수영조의 점검이 끝난 후에 이용자를 입장하게 해야 함. ·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름(이 경우 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II 등급 기준을 적용) √ 유리잔류염소는 0.4㎎/L부터 1.0㎎/L까지의 범위 내여야 함 √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해야 함 √ 탁도는 1.5 NTU 이하여야 함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L 이하로 해야 함 √ 총대장균군은 10ml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여야 함 √ 비소는 0.05㎎/L 이하이고, 수은은 0.007㎎/L 이하이며, 알루미늄은 0.5㎎/L 이하여야 함 √ 결합잔류염소는 최대 0.5mg/L 이하여야 함 ·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해야 함 · 수영조 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게 해야 함 · 수영조 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영조 주위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욕수를 교체해야 함
썰매장업	·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함 · 슬로프 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슬로프 내의 바닥면을 평탄하게 유지·관리해야 함 · 눈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안전매트 안쪽)를 모두 폭 1m 이상, 높이 50cm 이상의 눈을 쌓거나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함 · 슬로프의 바닥면이 잔디나 그 밖의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무도학원업은 3.3㎡당 동시수용인원 1명, 무도장업은 3.3㎡당 동시수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수용해서는 안 됨 ·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함
빙상장업	· 이용자가 안전모, 보호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 등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함

체력단련장업	· 이용자의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동기구 간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야구장업	· 이용자가 안전모 및 안전보호대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함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골프채, 골프화 등의 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야구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이용자가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안전모, 야구장갑 등의 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 타석에는 1명만 입장하도록 지도해야 함
체육교습업	· 이용자가 해당 운동 종목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운동 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 운동 시설 및 부대 시설은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인공암벽장업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함)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함. 다만, 운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음 등반의 진행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용자에게 사전교육을 해야 함 안전관리요원 또는 체육지도자는 이용자가 등반하기 전에 안전벨트, 고리(카라비너), 확보기구, 암벽화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함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은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장비(안전벨트, 고리, 밧줄, 퀵드로우, 확보기구 등)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장비는 반기마다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한 점검 대장을 인공암벽장 내에 비치해야 하며, 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비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함 홀드를 구조부재에 연결할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수시로 홀드의 고정상태를 확인해야 함 홀드 내 먼지와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함

※ 안전·위생기준 위반 시 제재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위의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 위의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2호·제3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체육시설업 시설 이용자의 안전·위생기준 준수

이용자의 안전·위생기준 준수

▪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체육시설업의 공통 및 종류별 안전·위생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만약,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보호 장구 착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의 보험가입 의무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본문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 등록 체육시설업자 : 시·도지사
- 신고 체육시설업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다만,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경영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단서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위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8호).

▪ 위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4호).

안전관리교육

체육시설업자의 안전관리 교육

▪ 체육시설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8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

-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의 내용과 방법

-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방안
-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사용법

▪ 체육시설업자는 연수·강의 등의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 또한, 체육시설업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3항).

5. 체육시설업 승계·휴업 등

5.1.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5.1.1. 체육시설업 승계 등

체육시설업의 승계

상속·영업양도 또는 합병에 의한 체육시설업 승계

▪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사람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사항 포함)를 승계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체육시설업의 인수

경매, 환가 등에 의한 체육시설업 인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필수 시설을 인수한 사람은 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사항 포함)를 승계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 체육시설업의 필수 시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 공통 시설 기준>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한 시정명령, 등록 취소, 영업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제재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함)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1항).

-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을 폐업한 후에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 등"이라 함)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에 폐업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을 할 때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친족 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친족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2항).

- 다만, 친족 등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5.2.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5.2.1. 체육시설업의 휴업·폐업

체육시설업 휴업 및 폐업

체육시설업의 휴업

-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통보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본문).
  - 다만, 실외수영장업자나 썰매장업자가 계절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단서).
-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의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체육시설업의 폐업

- 체육시설업자가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통보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본문).
- 체육시설업자가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의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휴업 및 폐업의 통지

- 체육시설업자는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회원(또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 또는 교습 약정이 종료되지 않은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본문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제4항).
  - 휴·폐업 사유
  - 휴업 기간 또는 폐업일
  - 이용료의 반환 방법
- 다만, 체육시설업자는 회원 또는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모든 장소에 위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휴업 및 폐업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단서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1. 해당 영업소의 내부와 외부의 잘 보이는 곳
2. 해당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

▪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 또는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법」 상 휴업·폐업의 신고

휴업·폐업의 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 그 밖의 참고 사항

▪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받는 불이익

· 폐업 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또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신고(다음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않는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 자주묻는 질문 답변 >